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6도7031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삼윤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324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1은 2024. 1. 12.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Polyolefin Elastomer(이하 'POE'라 한다) 생산 기술(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4. 1. 12.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같은 해 3. 4.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외국회사명 1 생략)(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등 외국 기업에 제공하거나 외국 기업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POE 생산 기술에 관한 출력 문서 및 파일을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피고인 1은 이 사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POE 생산 조건표'를 작성하여 보유하던 중, 2024. 1. 30. 공소외 1 회사 측에 제공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자료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2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 1은 2024. 2. 28. 피고인 2로부터 (외국회사명 2 생략)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2(영문명 생략)의 'POE 파일럿 PFD 자료' 제공 요청 메시지를 전달받고, 피해회사 퇴직 이후에도 무단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 중 'POE 파일럿 현황 보고' 문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번]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POE PFD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 2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각 누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2023. 10. 26.부터 2024. 2. 27.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0,500,000원 및 미화 10,188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일부 미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 1이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측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소외 1 회사 측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등을 제공하기도 했던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 1이 지급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행에 대한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 1이 지급받은 돈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국내 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룩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외에도 그와 같은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유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하고, 이때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23. 5.경 피해회사의 퇴직자 공소외 3 및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외국 기업 공소외 1 회사를 소개받았고, 2023. 9.경 공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전문가로 피해회사에서 퇴직할 예정이던 피고인 1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 1은 2023. 9.경부터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2, 공소외 3 등과 함께 공소외 1 회사 측 관계자들과 컨퍼런스 콜로 이 사건 영업비밀과 관련된 회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경부터 12.경까지 서울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들과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업비밀과 관련된 대면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 측의 POE 생산 기술에 관한 질문이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해주거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3) 피고인 2는 2023. 10. 31. 자신이 운영하는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외국회사명 3 생략)(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총 계약대금을 미화 600만 달러로 하는 '20만 톤/연간 POE 공업화 장치와 25kg/시간 POE 중간 테스트 장치'에 관한 기술이전협약(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23. 10.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2024. 1. 12.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2에게 2024. 1. 30.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영업비밀을, 같은 해 2. 28.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기재 영업비밀을 각 누설하였다.

(5) 피고인 1은 2023. 10. 26.부터 2024. 2. 27.까지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 및 미화 10,188달러를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고, 위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2에게 누설하는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으로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고, 위 돈이 지급된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측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소외 1 회사 측의 질문이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답변 등을 제공한 행위도 결국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계속 보유 및 누설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1이 지급받은 위 돈은 그 전부가 기소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지급받은 위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 25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 25, 37, 4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1.가.의 1)항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2024. 1. 30. 누설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영업비밀과 2024. 2. 28. 누설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기재 영업비밀을 각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 2는 2023. 10. 31.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기술이전협약은 총 계약금액을 미화 600만 달러로 정하여 이를 11단계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미화 1,528,299달러는 위 협약에서 정한 3단계까지의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되었고 그러한 자격에서 공소외 1 회사와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소외 1 회사 측의 질문에 답변 등을 하였는데, 회의 참석 등도 이 사건 기술이전협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시점은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미화 1,528,299달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이다.

마)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1,528,299달러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영업비밀 자료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자료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기술이전협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받은 미화 1,528,299달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 즉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볼 수 없고, 위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 코리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 코리아에 대한 공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 코리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 코리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영업비밀',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

주 심 대법관 이숙연 _____